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년 3월 8일

회 사 명 : 한국철강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상돈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70
(전 화)02)705-4532
(홈페이지)http://www.kis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문종인
(전 화)02-705-453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기 정기)

아래와 같이 당사 제4기(2011. 1. 1 ~ 2011. 12.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70번지
한국철강(주) 본사 3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주당 배당금 : 900원)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등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등을 당사의 본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 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 ~ 5 <송부시한> 2012년 3월 15일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3월 23일 개최하는 한국철강주식회사의 제4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2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주소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조일 (출석률:60%)	곽철윤 (출석률:53.3%)	하성해 (출석률:53.3%)
			찬 반 여 부		
1	2011.01.20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현황보고 승인	참석(찬성)	참석(찬성)	참석(찬성)
2	2011.01.20	제 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참석(찬성)	참석(찬성)	참석(찬성)
3	2011.02.17	제 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참석(찬성)
4	2011.03.11	금융차입 증액의 건	불참	불참	참석(찬성)
5	2011.03.18	자금차입의 건	참석(찬성)	불참	불참
6	2011.04.06	기채 및 은행여신에 관한 건	불참	참석(찬성)	불참
7	2011.04.07	금융기관 차입의 건	참석(찬성)	불참	참석(찬성)
8	2011.05.04	외화포괄한도증액에 관한 건	불참	참석(찬성)	불참
9	2011.08.09	자금차입의 건	불참	불참	참석(찬성)
10	2011.08.17	외화포괄한도증액에 관한 건	참석(찬성)	불참	불참
11	2011.09.27	기채 및 은행여신에 관한 건	불참	참석(찬성)	불참
12	2011.10.25	구 마산부지 소송 관련의 건	참석(찬성)	불참	불참
13	2011.10.28	일괄여신 한도증액 및 일반대차입의 건	참석(찬성)	불참	참석(찬성)
14	2011.10.31	자금차입의 건	불참	참석(찬성)	참석(찬성)
15	2011.11.16	JINIL INTERNATIONAL 주식 매각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정찬현, 김조일, 하성해	2011.01.20	제 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011.03.08	제 3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가결
		2011.04.18	제 4기 1분기 재무제표 실사	가결
		2011.07.15	제 4기 반기 재무제표 실사	가결
		2011.10.14	제 4기 3분기 재무제표 실사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60억	3,600만	1,200만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포함 이사전원에 대한 한도승인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산업의 특성

철 강	철강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 및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산업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전략적 장치산업입니다. 그러나 국내 철강산업은 주원료인 철광석,원료탄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로의 주원료인 고철은 자급도가 70%에 불과하여 원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산업은 LCD, 반도체 산업과 유사한 기술 집약적 사업이며 TCO GLASS원 재료를 가공하여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또한 화학 산업과 제조기기, 자동화기기 등 기계장치산업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력변환과 수송을 수반하므로 전기전자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박막전지의 설치는 주택에서는 기존건물의 부합이나 신축건물의 건축자재 일부로서도 사용되어 건축 산업과 유기적 발전이 요구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철 강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80년대의 국내건설경기 회복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철강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철강산업의 성장은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융 위기에 대한 노력과 국내 산업의 성장세를 기반으로철강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고급강,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수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 및 조업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였던 고급강생산 및 공급체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태양광 산업은 그린에너지 구현에 있어 녹색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가속화되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 중 태양광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유망한 업종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철 강	전기로 제강업은 주로 국내외 건설경기 및 조선 산업의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2분기에 연중 수요가 증가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로 보면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이 대거 이뤄지는 성장 초기 및 중기에 호황을 누리다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드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경기사이클의 주기적 특성이 불분명해지고 연중 일정한 수요가 형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설경기 및 정부의 부동산, 건설 정책의 기조에 의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태양광 산업은 산업전반의 경기변동으로부터 영향보다는 초기 사업 단계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정책에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4) 경쟁요소

철 강	① 기술경쟁력 : 보통강의 경우 일반강의 조업기술은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나 제품의 기술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열위에 있다. 특수강의 경우 생산기술은 저급강의 경우 대등한 수준인 반면 고급강의 경우는 제강,정련기술이 열세에 있습니다. ② 가격경쟁력 : 철근과 형강등 조강류는 일본의 고가전략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미국과 EU에 비해서는 고철가격등으로 열위에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철강설비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세계적인 철강가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가격경쟁력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석탄 등 기존전력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발전단가가 높아, 제조 단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력과 15년 20년간 발전에 대한 제품의 품질보증이 중요합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철 강	철강산업의 주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스트림캐스팅공법등 혁신 철강기술 개발투자를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세계철강시장의 경우는 대규격화,고강도,고인성화기술등으로 시장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배양이 시급한 실정이나 전반적 기술개발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가 미흡하며, 이로인해 특수규격 특수강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 원재료인 TCO글라스는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철 강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시행시기인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대상국가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정부,기업, 환경단체들의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준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철 강	- 철근 -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 IMF 외환위기 이후 철강업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IMF 이전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어가고 있던 가운데 2002년 부터 시작된 국내 건설경기 호황 및 중국의 철강수요 급증등으로 인해 2004년도에는 국내 전기로 제강사들이 사상최대의 매출과 수익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제한과 긴축정책 선회 및 국내 건설경기의
-----	--

침체지속에 따라 당사의 주력품목인 철근등의 수요부진과 원자재 가격변동 심화, 중국산 저가철강재의 수입급증으로 당사를 비롯한 전기로 제강사들의 대내외적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경영상 리스크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원가절감 및 저가 원재료의 확보, 외부적으로는 판매처 다각화 및 신규수요창출, 저가 수입철강재 대응등으로 다각도의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단 조 -

최근 단조시장은 조선, 풍력발전 시장의 활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유단조 공장들의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공업용 기계산업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당사 생산제품인 구조용 탄소강 및 합금강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산등 저가품 일반 구조용강의 수입지속으로 국내시장의 잠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키 위해 국내 메이커들은 대형강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강 및 특수강, 공구강 위주로 생산시설의 증설 및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대외적인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쟁력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꾸준한 매출을 이뤄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경쟁사들의잇따른 단조설비 증설에 따른 국내생산량 증가로 판매경쟁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70톤 전기로 및 10,000톤 프레스의 단조설비 의정상가동을 위해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2008년 7월 2일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모듈 양산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출을 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2008년 12월 30일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총 111.5조(보급 100조, 기술개발 11.5조)을 투자하여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	--

(2) 시장점유율(철근)

구 분	제 04기 3분기	제 03기	제 02기
한국철강(주)	11.9	11.8	11.6
동국제강(주)	17.4	18.0	17.1
현대제철(주)	32.5	32.5	33.7

※ 위 자료는 철근의 내수시장점유율이며, 당사의 추정치 및 한국철강협회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철 강	당사는 본사인 창원공장에서 철근, 단조강(R/Bar 및 S/Bar, 일반단조품), 파이프를 주요 품목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영업지역은 부산, 경남, 경인지역으로 창원영업팀과 서울영업팀, 대구, 대전, 광주영업소 및 전주, 순천, 진주, 목포, 울산, 여수, 대구, 대전, 광주, 영주, 제주하치장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으며, 철근 수요자의 50% 이상은 건설업체이며 나머지는 관급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에너지	시장 초기 진입 단계로 내수 시장의 비중이 크며, 생산품인 태양광 모듈은 최종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발전차액제도 등의 국가 정책 지원에 따라 매출에 영향이 큼니다.

(4) 조직도

【3사업부 1실 10본부 1소 42팀】

회 장																																			
부 회 장																																			
대 표 이 사																																			
철 강 사 업 부																		단 조 사 업 부								에 너 지 사 업 부								기 획 조 정 실	
품질 경영		관리본부				조달 본부			생산본부				재정 본부		영업본부				생산기술 본부		영업본부				관리 본부		생산본부				영업 본부		에 너 지 연 구 소		

과목	제 04기	제 03기
자 산		
I. 유동자산	503,714,730,886	424,234,061,276
1. 현금및현금성자산	56,596,124,887	92,866,652,108
2. 금융기관예치금	93,821,632,053	12,030,435,074
3. 매출채권	189,301,953,103	184,702,921,823
4. 기타수취채권	1,718,522,416	510,781,953
5. 기타금융자산	13,105,000	144,815,000
6. 재고자산	153,898,968,524	121,492,215,285
7. 기타자산	8,067,676,493	12,486,240,033
8. 당기법인세자산	296,748,410	-
II. 비유동자산	511,435,406,555	554,186,327,841
1. 금융기관예치금	12,624,641,234	11,276,641,234
2. 기타수취채권	764,362,332	761,998,328
3. 기타금융자산	21,189,531,550	25,719,222,450
4. 유형자산	474,059,180,960	514,763,205,701
5. 무형자산	979,906,928	1,665,260,128
6. 관계기업투자	1,817,783,551	-
자 산 총 계	1,015,150,137,441	978,420,389,117
부 채		
I. 유동부채	324,967,234,512	232,194,560,655
1. 매입채무	210,009,924,469	170,302,361,400
2. 당기법인세부채	-	3,519,020,241
3. 기타지급채무	44,073,533,438	36,455,945,772
4. 차입금	58,383,245,537	14,315,848,538
5. 기타부채	12,500,531,068	7,601,384,704
II. 비유동부채	16,162,387,640	23,527,595,235
1. 종업원급여부채	2,674,770,471	1,475,593,633
2. 확정급여부채	10,543,319,569	10,154,237,740
3. 이연법인세부채	85,245,749	10,483,643,293

과목	제 04기	제 03기
4. 기타지급채무	2,859,051,851	1,414,120,569
부채총계	341,129,622,152	255,722,155,890
자본		
I.납입자본	598,598,163,966	598,598,163,966
1. 자본금	46,050,000,000	46,050,000,000
2. 주식발행초과금	552,548,163,966	552,548,163,966
II.이익잉여금	69,237,051,470	111,995,581,475
III.기타포괄손익누계액	6,346,854,298	10,056,706,123
IV.기타자본구성요소	(161,554,445)	(161,554,445)
V.비지배지분	-	2,209,336,108
자본총계	674,020,515,289	722,698,233,227
부채와자본총계	1,015,150,137,441	978,420,389,117

※ 제 3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것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제 3기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4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3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한국철강주식회사

(단
위 : 원)

과목	제 04기	제 03기
I.매출액	1,020,601,374,388	940,539,498,327
II.매출원가	973,310,334,932	867,389,914,246
III.매출총이익	47,291,039,456	73,149,584,081
IV.판매비와관리비	27,551,576,909	27,003,580,872
V.물류비	16,399,697,568	16,982,729,378
VI.기타영업수익	3,616,796,391	18,817,847,391
VII.기타영업비용	49,671,517,304	3,041,970,860
VIII.영업이익(손실)	(42,714,955,934)	44,939,150,362
IX.금융수익	5,758,444,880	3,304,413,433
X.금융비용	5,533,880,660	2,484,719,819
X 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손실)	(42,490,391,714)	45,758,843,976
X II.법인세비용	(8,980,164,326)	9,033,334,670
X III.당기순이익(손실)	(33,510,227,388)	36,725,509,306
X IV.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순손익	(33,724,718,540)	36,107,166,175
X V.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순손익	214,491,152	618,343,131
X VI.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1. 기본주당이익(손실)	(3,663)원	3,922원

※ 제 3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것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제 3기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기 2011년 01월 0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 2012년 03월 23일)

제3기 2010년 01월 0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 2011년 03월 18일)

한국철강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04기	제 03기
I.미처분 이익잉여금	66,751,208,450	110,338,352,795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1,223,595,055	77,114,927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변경효과	-	(3,411,345)
3. 보험수리적손익	(747,668,065)	527,605
4. 당기순이익(손실)	(33,724,718,540)	36,107,166
합 계	66,751,208,450	110,338,352,795
II.이익잉여금 처분액	9,114,757,740	9,114,757,740
1. 이익준비금	828,614,340	828,614,340
2.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900원(18%) 전기 900원(18%)]	8,286,143,400	8,286,143,400
III.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7,636,450,710	101,223,595,055

※ 제 3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것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제 3기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4기	제3기
주당배당금(원)	900	900
시가배당율(%)	3.96	3.13
배당금 총액(원)	8,286,143,400	8,286,143,400

* 제4기 시가배당을 산정시 시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전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22,740원)를 사용 하였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개정상법 제344조부터 제351조에 의거 다양한종류주식을 정관의 정항으로 도입할 수 있게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 마련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사백이십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사백이십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④ (생략) (신 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④ (좌동)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통지공고하도록 함에 따른 반영
(신 설) (신 설)	제14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상법 제469조 제4항에 따라 사채발행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⑤ (생략)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⑤ (좌동)	제14조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
(신 설)	제34조의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① 이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 및 제415조의 내용을반영하여 이사 또는 감사 등의책임 강경 근거규정을 신설함
(신 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서 신설)	제36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수로 한다.	개정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를 반영하여단서를 신설함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상법 제391조를 반영하여 문구를 조정함
③ (생략)	③ (좌동)	
제39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39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좌동)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전체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변경함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9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 ④ (생략)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9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 ④ (좌동) 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개정상법 제412조의4 신설로 인하여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청구권이 인정되고, 상법 제415조의2 제7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도 동 조문을 준용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명시함 현행상법 제415조의2 제6항 현행상법 제415조의2 제5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생략)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좌동)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제447조를 반영해 연결재무제표도입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개정상법 제449조의2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에 따른 근거규정 반영
제42조의2(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소각할 주식의 수량 및 소각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삭 제)	개정상법 제341조 및 제343조를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자본감소를 제외한 주식의 소각(이익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② (좌동)	개정상법 제462조의4에서 정관으로 현물 배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관 제8조에서 종류주식을 도입함에 따라 동조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함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5항, 제14조, 제34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 제43조의 개정사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시행한다.	개정상법과 관련한 정관개정사항은 법 시행일 (2012년 4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명기함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상돈	1937.10.01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김만열	1942.01.12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장세홍	1966.10.01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정찬현	1946.03.02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문종인	1953.05.20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정철기	1955.08.18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이병제	1959.07.29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이수하	1961.01.25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조일	1944.11.10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곽철윤	1947.11.10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하성해	1952.06.22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1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장상돈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회장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회장	없음
김만열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부회장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사장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부회장	없음
장세홍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전무	한국특수형강(주) 이사 한국철강(주) 대표이사 전무	없음
정찬현	한국철강(주) 부사장	세화통운(주) 대표이사 사장 한국철강(주) 부사장	없음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문종인	한국철강(주) 영업본부장	한국철강(주) 자금팀장 한국철강(주) 영업본부장	없음
정철기	한국철강(주) 생산본부장	한국철강(주) 무역팀장 한국철강(주) 생산본부장	없음
이병제	한국철강(주) 기획조정실장	한국철강(주) 전략기획팀장 한국철강(주) 기획조정실장	없음
이수하	한국철강(주) 조달본부장	한국철강(주) 구매팀장 한국철강(주) 조달본부장	없음
김조일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없음
곽철운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마산상공회의소신협 이사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없음
하성해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주)한국스틸 대표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찬현	1946.03.02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김조일	1944.11.10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하성해	1952.06.22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정찬현	한국철강(주) 부사장	세화통운(주) 대표이사 사장 한국철강(주) 부사장	없음
김조일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없음
하성해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주)한국스틸 대표 한국철강(주) 사외이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2011년)	당 기(2012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3)	11(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억원	70억원

※ 기타 참고사항